

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
관한 조례안
(김현주 의원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532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: 2021. 1.

발 의 자: 김현주 의원

찬 성 자: 은복실 의원, 김종곤 의원,
이민옥 의원, 임종숙 의원,
오천수 의원, 신동욱 의원

1. 제안이유

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~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의 수립(안 제3조~제5조)

다.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(안 제6조~제7조)

라.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~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협조부서: 복지정책과

다. 예산조치: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·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

라. 입법예고(2021. 2. 9. ~ 2. 14.) 결과: 특기할 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1인 가구”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·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.
2. “사회적 고립가구”란 가족, 이웃,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.
3.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
4. “고독사 위험자”란 경제적·신체적·정서적·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무연고 사망자”란 사망자 중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,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,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5조(추진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매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
2.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
3.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
4. 성별, 연령,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
5.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
6.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
7.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,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원대상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
2.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,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
3. 동 주민센터,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
4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제8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
2. 건강 검진 등 의료 지원
3. 가스·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
4.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
5.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

6. 반찬 등 식품 지원

7. 사물인터넷(IoT, Internet of Things)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

8.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·연계 서비스

9.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서비스

10. 문화·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

11.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, 응급의료기관,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·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< 관 계 법 규 >

□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,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